

7월 6일 고시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이 섭외한 인턴에 대해 학점인정이 불가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 의 하나로 "현장실습 수업방법"을 규정하는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 수업방법을 "현장실습학기제" 라는 용어로 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중 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조항을 발췌하여 안내 드립니다.

제6조(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다.

1.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선발하는 경우
2.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3.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4. 제4조제4항·제5항의 수업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5. 제18조제2항·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6. 제22조, 제25조제3항에 따른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7. 제25조제4항에 따른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8.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 서식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

이에 이번 운영규정(고시)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학기제 형태로 운영하면 안되는 불인정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므로,
학생이 기업을 섭외해 오거나, 학교(현장실습지원센터) 와 무관한 학생의 인턴, 근로, 아르바이트 활동 등 조기 취업 등의 형태는 현장실습 학점으로 불인정합니다.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시행 2021. 7. 6.] [교육부고시 제2021-19호, 2021. 7. 6., 전부개정]

제6조(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다.

1.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선발하는 경우
2.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3.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4. 제4조제4항·제5항의 수업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5. 제18조제2항·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6. 제22조, 제25조제3항에 따른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7. 제25조제4항에 따른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8.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 서식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